

등록번호	취업지원과-6784
등록일자	2016.4.28.
결재일자	2016.4.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취업지원과장	기획재정국장
장세복	최창규	이종서	전결 04/28 한수경
협 조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취업지원과**

요 약 지

2016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7. 1.(금) ~ 11. 30.(수) [5개월]
- 모집인원 : 112명
- 사 업 비 : 1,254,426천원[시비626,713천원(50%),구비627,713천원(50%)]
- 추진사업 : 16개부서, 15개 동주민센터 총38개 사업 (제2장,참조)

■ 참여자 접수 및 선발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울시 중구민으로서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선발방법 :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자격 등을 채점표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접수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일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 임 금 : 일 37,000원/ 교통·간식비 5,000(월평균 실수령액 약104만원)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16. 5. 16.(월) ~ 5. 20.(금) [5일간]
- 재산 등 조회 및 선발심사 : 2016. 5. 24.(화) ~ 2016. 6. 20.(월)
- 선발 및 부서배치 : 2016. 6. 23.(목)
- 사 업 개 시 : 2016. 7. 1.(금) ~ 11. 30.(수)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 1 장

공공근로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6. 7. 1.(금) ~ 11. 30.(수) 【5개월】
2. 모집인원 : 총112명
3. 사업예산 : 1,254,426천원[시비626,713천원(50%),구비627,713천원(50%)]
 - 가. 인 건 비 : 1,244,706천원 (시:구비,50%:50%)
 - 나. 일반운영비 : 8,720천원 (시:구비,50%:50%)
 - 다. 업무추진비 : 1,000천원 (구비100%)
4. 사업구분
 - 가. 일반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신청사업
 - 나. 청년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 신청(우선채용)
5. 추진사업 (2장, 별표5참조)
 - 가. 3개분야 :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자전거수리,주정차관리)
 - 나. 16개 부서, 15개 동주민센터 총38개 사업
6. 추진일정
 - 가. 모집공고 : 2016. 5. 3.(화) ~ 5. 17.(화)
 - 나.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20.(금)
 - 다. 자격조회 및 심사 : 2016. 5. 24.(화) ~ 6. 20.(월)
 - 라. 선발 및 부서배치 : 2016. 6. 23.(목)
 - 마. 사업실시 : 2016. 7. 1.(금) ~ 11. 30.(수)

1. 선정방향

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추진

나.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

○ 복지시설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마을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선정

○ 기술습득으로 취업능력 향상 가능한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시행

다. 기존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위주 추진

라. 단순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억제

○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2.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가.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건소 검진업무 지원 등 청년층에 적합한 사업

3. 전문인력 운영 사업

가. 대상사업 :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나. 필요성 : 자전거 수리 가능한 전문인력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 증대

다. 자격 : 자전거 정비사 자격증 가진 자(가점 적용)

4. 사업선정 : 전 부서 사업 수요조사 실시 (취업지원과-5831, 2016. 4. 12.)

가. 상반기 계속사업(35) : 취업지원과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등 35개 사업

나. 하반기 신규사업(3) : 문화관광과 "문화원환경정비", 여성가족과 "지역 아동센터급식도우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

5. 사업 선정현황[표]

연번	사업분야	관리부서	사 업 명	배정인원
합계				112
1	공공서비스지원 (청년사업) (14명)	취업지원과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1
2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0
3		건강관리과	건강검진사업 운영보조	1
4		의 약 과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보조	2(증1)
5	공공서비스지원 (21명)	복지지원과	보훈복지시설 운영지원	3(증1)
6		복지지원과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보조	1
7		복지지원과	지역사회지킴이	1
8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사업 운영보조	6
9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 운영보조	6
1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2(신규)
11		여성가족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	1(신규)
12		세무2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	1
13	환경정비 (36명)	총 무 과	구청사 환경정비	4
14		문화관광과	중구 문화원 환경정비	1(신규)
15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	2(증1)
16		청소행정과	도심형 재활용정거장 관리	1
17		청소행정과	공공화장실 관리	2(증1)
18		청소행정과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	1
19		공원녹지과	공원 조성 및 관리	22(증1)
20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정비사업	2
21		민원여권과	민원실 환경정비	1
22	기타사업 (11명)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7(증1)
23		시장경제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관리	4

24	환경정비 (30명)	소공동	동 편익사업	2
25		회현동	동 편익사업	2
26		명 동	동 편익사업	2
27		필 동	동 편익사업	2
28		장충동	동 편익사업	2
29		광희동	동 편익사업	2
30		을지로동	동 편익사업	2
31		신당동	동 편익사업	2
32		다산동	동 편익사업	2
33		약수동	동 편익사업	2
34		청구동	동 편익사업	2
35		신당제5동	동 편익사업	2
36		동화동	동 편익사업	2
37		황학동	동 편익사업	2
38		종림동	동 편익사업	2

제 3 장

신청자 접수

1.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 단,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구청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 201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6년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2. 신청서 접수 및 처리[담당 : 동 주민센터]

가. 신청자 접수기간 : 2016. 5. 16.(월) ~ 5. 20.(금) [5일간]

나.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붙임 1】
- 정보제공 동의서【붙임 2】
-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사업시행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원칙

- 신청자격 확인 : 동 주민센터 담당

★ 동 주민센터 담당 확인사항 ★

- 정보제공동의서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서명 확인**
- 1세대 2인이상 신청여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여부
- 종합토지세액, 재산세액, 자동차 소유여부
- 장애인 여부(장애인카드소지자)를 포함 각종 가점요소 적합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여부 (세무종합시스템상 면허세부과여부)

3. 조회 및 확인 [담당 : 취업지원과]

가.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기간

- 실업급여 수혜자중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정기 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 ▷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기준일 : 단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 중 수시(대체) 선발의 경우 사업 투입일을 기준

나. 공적연금수혜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혜자는 참여배제

다. 정기소득이 있는자

-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정기소득 있는자로 보아 참여배제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 정보화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위탁사업 참여자, 퇴직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자 등은 예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
 - ▷ 단, 정기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소득임을 증명할 경우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 신청자의 재산상황(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소유여부)은 신청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여 기재

제 4 장

대상자 선발

1. 선발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가. 고려요소

- 필수 고려요소 : 재산상황,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등
- 임의 고려요소 : 직업훈련 참여 실적, 실업기간, 자격·경력·능력 등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 기준 표준(안)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배 점	비 고(확인방법)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45백만원 미만 · 1.35백만원 미만 · 2억원 미만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가구소득	· 2만원 미만 · 3만원 미만 · 5만원 미만 · 5만원 이상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지역,직장포함)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 미참여 · 5개월 이하참여 · 5개월 초과참여	20 10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참여횟수 (당해 사업기간 포함 최근2년)

세대주	세대주 여, 부	10/0	등본확인 단독세대주는 0점
부양가족수	. 3명이상 . 2명 . 1명 . 없음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세대주·동거인제외)
취업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1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5	
	장애인 및 가족	5	
자격요건	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	10	
구 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경력 등)	10	가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확인

- 가족합산재산2억원초과자는 배제하고,재산보유액별로 차등을두어10~0점
가중치 부여

▷ 재산(주택,건축물,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에 한함

- 이의 신청 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가능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1,600cc이상 중.대형 자가용) 등은 심사 전.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발생자, 자체판단으로 부적격 판정시 배제조치

○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를 배제

< 201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보험료	29,588	50,380	65,174	79,968	94,762	109,556

-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 으로 간주
-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확인
 - 공공근로사업 및 유사 재정일자리아사업에(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참여 포함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
 - ▷ 여성세대주는 남편이 근로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 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경우만 인정
 -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여성)세대주 가점 부여하지 않음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 부양가족 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18세 초과 65세 미만 자는 제외 (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 근로무능력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취업 취약 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 증명서 확인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가중치 10점 부여함

2.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 가.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정기소득 유무, 실업 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 여부,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고려요소별 가감점 항목”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나. 특히, 재산 2억원 이상 참여자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구소득 합산시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함
- 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청년사업의 경우 청년대상자 우선선발 후 미달시 기타연령 선발

3. 참여자 선발

가.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나.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다.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한 공공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하여 선발하나, 사업의성격, 사업부서의 요구사항 을 고려 최종선발

▷ 「표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서식」 참조 :【붙임 4】

4. 참여기간 제한

가.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

▷ (사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연속참여자는 2016년 하반기 참여 불가

〈 60세 이상 등의 사례 〉

○ 원 칙 : 연속참여 10개월 제한만 있음

○ 사 례 :

①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연속 참여자는 2016년 하반기에 참여 불가

② 2015년 하반기에 참여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에 참여한 자는 연속참여 5개월이므로 참여 가능

나.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5개월)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실 근무월수만 계산

5. 참여자 선발 시 참고사항

가.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나.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6.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가.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나.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단계 참여 배제

-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 참여 후 포기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단계 참여 허용

제 5 장

임금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2. 임 금

가. 임금단가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6,030원 × 6시간 = 36,180원 ⇒ 37,000원 지급
- 실 근무일 1일에 대해 부대비용 5,000원 지급

나. 임금의 지급방식

-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신용불량자의 경우 임금지급 방법** : 현금지급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현금지급동의서 작성 및 현금지급대장 서식【붙임 6】 작성 관리
 - ▷ 신용불량자인 경우만 적용 가능 (다른 사유로 적용 불가)
 - ▷ 부서통장으로 현금 지급 후 인출하여 당사자 지급(가족계좌로 지급 불가)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6시간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정규 시간 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 (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대체 휴무 실시(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
 - 동절기 근로시간도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실외작업 시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때에는 사업부서의 판단 하에 실내작업 대체

나.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주일 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일의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수당은 지급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
 - ▷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는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수당 지급 불가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 + 유급 휴가(1일)분의 임금을 지급
-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
 - 1월(月)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7. 15. ~ 8. 14.)

다.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 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

라.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경조사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준한 휴가 부여(단,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 일일임금은 미지급하되 주·연차 유급 휴가 인정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다만, 교통비·식비 등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지급
- 작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일일임금의 반액을,
 - 3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연장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근무 가능
-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할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 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사업의 재참여 요청 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내 참여 가능

마. 근로조건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민원 등 분쟁소지 해소
- 사업시행 부서별로 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참조 :【붙임 6】

1. 사용증명서 발급

가. 공공근로사업에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증명서"를 사업시행부서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함

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붙임 9】서식

2. 사업장 관리

가. 작업 목표량 부여 : 사업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달성하도록 지도

나. 작업장 지도·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점검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
 - ▷ 「표준 근무기록부 서식」 사용 :【붙임 8】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 상 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임금 미지급)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2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 절차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배제(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 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불이익 금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가. 안전점검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 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 때까지 작업 중지 등
- 겨울철 : 저체온증 동상 낙상 등 우려시 작업 중지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 기	점 검 내 용	점 검 자
↓			
1단계	작업시작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			
2단계	작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3단계	작업 완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나. 안전조치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구청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다.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 매 단계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

라.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기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단, 2016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제7장

홍보 방안

1. 언론매체 활용 : 보도자료 제공
2. 중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제8장

추진 일정

1. 공 고 : 2016. 5. 3.(화) ~ 5. 17.(화)
2. 신청접수 : 2016. 5. 16.(월) ~ 5. 20.(금)
3. 자격조회 및 선발심사 : 2016. 5. 24.(화) ~ 2016. 6. 20.(월)
4. 선발 및 부서배치 : 2016. 6. 23.(목)
5. 사 업 개 시 : 2016. 7. 1.(금) ~

제9장

행정사항

1. 공고 및 홍보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2. 공공근로 참여자 접수 : 2016. 5. 16.(월) ~ 5. 20.(금) 【동 주민센터】

- 【붙임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식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1부.
- 【붙임 3】 신청자 확인 서식 1부.
- 【붙임 4】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서식 1부.
- 【붙임 5】 현금지급대장 서식 1부.
- 【붙임 6】 근로계약서 서식 1부.
- 【붙임 7】 근무기록부 서식 1부.
- 【붙임 8】 보안서약서 서식 1부.
- 【붙임 9】 경력증명서 서식 1부.

【붙임 1】

중구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6. . .)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요 이력 사항	전공					
	자격증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경력사항			
취업 관심 분야	①사무직 ②마케팅·유통 ③영업직 ④IT ⑤생산직 ⑥서비스 ⑦전문·특수 ⑧미디어 ⑨기타()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2015년 : 상반기(), 하반기() 2016년 : 상반기()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공무원 가족 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련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구청,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사립학교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 참여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16. . .

○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신청인			
배우자			
가 족			

○ 건강보험증

관계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서명
신청인			
보험가입자(부양자)			
배우자(별도가입시)			

【붙임 3】

신청자 확인

※ 담당공무원이 작성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해당, 해당없음
②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③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④ 여성세대주 (가 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⑤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⑥ 6개월이상 실직자		해당, 해당없음
⑦ 청년층 대상 사업 참여자(만 39세 이하)		해당, 해당없음
⑧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⑨ 노숙인		해당, 해당없음
⑩ 결혼이주여성		해당, 해당없음
⑪ 면허세 부과(본인 또는 배우자)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⑫ 2014년 7월이후 공공근로 참여 여부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해당없음
⑬ 기재사항	재산세 과세액(2015년 정기분 합산)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⑭ 주민등록 등본 확인		신청서에 이상 (없음, 있음)
⑮ 기타 담당자의 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6. .

동장(관인)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4】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표준안)

접수처: 동 주민센터/ 신청자 성명 :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가 중 치 (100)	비 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4.5백만원 미만 : 10점 · 1.35백만원 미만 : 5점 · 2억원 미만 : 0점	10 (10, 5, 0)	재산조회 결과
가구소득	(지역, 직장보험포함) · 2만원 미만 : 15점 · 3만원 미만 : 10점 · 5만원 미만 : 5점 · 5만원 이상 : 0점	15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사업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20점 ·참여 5개월 이하 : 10점 ·참여 6~9개월 : 0점	20 (20, 10,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 부	10 (10, 0)	단독세대주는 0점
부양가족수 (세대주동거인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자만 해당)
취업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10(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5(5, 0)	
	장애인 및 가족	5(5, 0)	
자격요건	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	10(10, 5, 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실업기간, 직업훈련 등)	10	가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판단기준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표준안)

◀ 근로계약서 : 예시 ▶

1. 중구에서 실시하는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
- 근무기간 : 2016.7.1.~ 11.30.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37,000원 ” (매월 사업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계좌번호 :)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6시간(09:00~16:00)(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계약 해지(심의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6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 . .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자필서명)

【붙임 7】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	/			
비 고			취업박람회			/	/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	/	/					/
비 고			/	/	/		조퇴			/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						/	/		
비 고	/		무단결근				/	/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 기본임금 000,000원 - 21일, 00,000원 ○ 식비 00,000원 - 21일, 0,000원 ○ 주·월차수당 000,000원 - 주4,월00,000원 합 계 0,000,000원 ○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2016. . . .										
[작성자] 사업부서 담당:					성명 :			(인)		
[확인자] 사업부서 과(동)장:					성명 :			(인)		

【붙임 8】

보안서약서

본인은 2016년 하반기 중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시 및 중구청의 공공근로사업지침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